

2019. 1. 28. 10:00

제26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월 일

2. 제 출 자 : 도일용 의원, 김은영 의원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되어 통보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별표 2 월정수당 지급액 변경

구 분	지 급 액
2019년	월 1,882,370원
2020년	2019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1년	2020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2년	2021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되어 통보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제3조 별표2에 2019년 월정수당은 2018년 월정수당 1,854,560원에서 1.48% 인상한 1,882,370원으로 하고,
- 2020년 월정수당은 2019년 월정수당지급액에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으로 하며,
- 2021년 월정수당은 2020년 월정수당지급액에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으로 하며,
- 2022년 월정수당은 2021년 월정수당지급액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 급 액
2019년도	월 1,882,370원
2020년도	2019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1년도	2020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0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2년도	2021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 지방자치법 제33조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민선 7기 공약사항의 이행 및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사항
 - 주민복지국의 분장 업무 명칭을 일부 변경함.
(여성청소년, 보육지원, 복지자원·희망복지 등 → 여성가족, 보육시설, 복지나눔·복지연계 등)
 - 건설도시국 내 도시정비과 신설 및 도시과 업무 기능 조정.
(도시행정·도시계획·하수시설·농업시설·전기→도시행정·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디자인)
 - 정책관광국 내 교육청소년과 신설.

○ 관련 조례 개정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중 위원회의 구성: 부위원장 건설도시국장→주민복지국장, 당연직 위원 중 기획감사 담당 부서장→기획예산 담당 부서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안내판: 치수방재과→안전방재과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간사 : 군 정책사업과장→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 제7조 중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 군 정책관광국장→교육 업무 담당 국장

5.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2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6.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4) 입법예고: 2019. 1. 8. ~2019. 1. 17.
- 5)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개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 건설도시국 내 도시정비과를 신설하고, 부서 간 업무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늘어나는 교육정책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정책관광국 내 교육청소년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 또한 업무 조정 및 강화를 위해 혁신평가팀, 청사관리팀, 가로정비팀, 공공개발팀, 평생교육팀, 청소년팀 등 6개 팀을 신설,
- 민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담당명칭을 변경.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군정홍보·예산·지역인구정책·서울사무소”를 “기획·군정홍보·예산·지역인구정책·혁신평가·서울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무·규제개혁·감사·조사평가”를 “법무·규제개혁·감사·조사”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공무원단체지원”을 “직원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경리·계약·재산관리”를 “경리·계약·재산관리·청사관리”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여성청소년·보육지원”을 “여성가족·보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생활보장·통합조사·통합관리·주거복지”를 “기초생활보장·복지조사·복지관리·주거의료복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복지자원·희망복지”를 “복지나눔·복지연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시과·안전방재과”를 “안전방재과·도시과·도시정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도시행정·도시계획·하수시설·농업시설·전기”를 “안전기획·사회재난·자연재난·하천시설·하천관리”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안전기획·사회재난·자연재난·하천시설·하천관리”를 “도시행정·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디자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건축행정·주택·공동주택관리·공공시설·디자인·도시재생”을 “가로정비·하수시설·농업시설·전기”로 한다.

제8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건축행정·주택·공동주택관리·공공시설

제9조제1항 중 “정책사업과·문화체육과·관광과”를 “정책사업과·문화체육과·관광과·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공공사업·민자사업·교육정책”을 “공공사업·공공개발·민자개발”로 한다.

제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교육정책·평생교육·청소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 담당 부서장”을 “기획예산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침수 위험 지구 등의 표지판에 “치수방재과”를 “안전방재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군 정책사업과장”을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군 정책관광국장”을 “교육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교육 업무 담당 국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보조기관의 설치) ①(생략) ② 기획예산실장은 <u>기획·군정홍보·예산·지역인구정책·서울사무소에</u>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법무감사실장은 <u>법무·규제개혁·감사·조사평가</u>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보조기관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 -----<u>기획·군정홍보·예산·지역인구정책·혁신평가·서울사무소</u>----- ③ -----<u>법무·규제개혁·감사·조사</u>-----
제5조(자치행정국) ①(생략) ② 자치행정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총무·인사교육·자치행정·공무원단체지원·민방위에</u> 관한 사항 2. ~ 3.(생략) 4. <u>경리·계약·재산관리</u>에 관한 사항 5. ~ 7.(생략)	제5조(자치행정국) ①(현행과 같음) ② ----- 1. -----<u>직원복지</u>----- 2. ~ 3.(현행과 같음) 4. <u>경리·계약·재산관리·청사관리</u>----- 5. ~ 7.(현행과 같음)
제7조(주민복지국) ①(생략)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복지기획·노인복지·여성청소년·보육지원</u>에 관한 사항 2. <u>생활보장·통합조사·통합관리·주거복지</u>에 관한 사항 3. <u>복지자원·희망복지·장애인복지·드림스타트</u>에 관한 사항 4. ~ 7.(생략)	제7조(주민복지국) ①(현행과 같음) ② ----- 1. <u>복지기획·노인복지·여성가족·보육시설</u>----- 2. <u>기초생활보장·복지조사·복지관리·주거의료복지</u>----- 3. <u>복지나눔·복지연계·장애인복지·드림스타트</u>----- 4. ~ 7.(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8조(건설도시국) ① <u>건설도시국에 건설과 · 도시과 · 안전방재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를 둔다.</u>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생략) 2.<u>도시행정 · 도시계획 · 하수시설 · 농업시설 · 전기에 관한 사항</u> 3.<u>안전기획 · 사회재난 · 자연재난 · 하천시설 · 하천관리</u>에 관한 사항 4.<u>건축행정 · 주택 · 공동주택관리 · 공공시설 · 디자인 · 도시재생</u>에 관한 사항 5.~ 6.(생략) <신설> 7.<u>토지관리·지적·지적재조사·지가정보·도로명주소</u>에 관한사항	제8조(건설도시국) ① ----- <u>건설과 · 안전방재과 · 도시과 · 도시정비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u>----- ② ----- 1.(현행과 같음) 2.<u>안전기획 · 사회재난 · 자연재난 · 하천시설 · 하천관리</u>----- 3.<u>도시행정 · 도시계획 · 도시재생 · 도시디자인</u>----- 4.<u>가로정비 · 하수시설 · 농업시설 · 전기</u>----- 5.~ 6.(현행과 같음) 7.<u>건축행정 · 주택 · 공동주택관리 ·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u> 8. -----
제9조(정책관광국) ① <u>정책관광국에 정책사업과 · 문화체육과 · 관광과로 둔다.</u> ② 정책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u>정책사업 · 공공사업 · 민자사업 · 교육정책</u>에 관한 사항 2.~ 4.(생략) <신설>	제9조(정책관광국) ① -----<u>정책사업과 · 문화체육과 · 관광과 · 교육청소년과</u>----- ② ----- 1.<u>정책사업 · 공공사업 · 공공개발 · 민자개발</u>----- 2.~ 4.(현행과 같음) 5.<u>교육정책 · 평생교육 · 청소년에 관한 사항</u>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4. 주요내용

○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안 별표)

- 총 정원: 892명 → 927명(증35)

- 집행기관 정원: 878명 → 913명(증35)

※ 의회 정원 변동 없음(14명)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규제심사: 원안 동의

○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2개과 6팀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과 격무부서 업무량 증가 등에 따라 정원 일부를 증원.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2조 중 총 정원 892명을 927명으로 증원하고,
-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878명을 913명으로 증원하는 등 총 35명을 증원.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는 본청 정원을 5급 2명, 6급이하 29명으로 하고, 읍 및 그 출장소에 6급이하 4명을 증원.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92”를 “927”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878”을 “913”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u>892</u> 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u>878</u> 명 2.(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_____ _____ _____ <u>927</u> _____ _____ 1. _____: <u>913</u> 명 2.(현행과 같음)

【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892927	553584	14	98	172176	55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863898	548579	14	74	172176	55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143	2527	2	4	7	3
6급이하 계	813846	517546	11	69	164168	52
연구직 계	3	3				
연 구 관						
연 구 사	3	3				
지도직 계	24			24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2			22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1	1				

소요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2019년 기준인건비 통보와 관련하여 행정기구 개편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원 증원 요인이 발생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일반직 공무원 증원 35명(5급 +2, 6급 +9, 7급 +16, 8급 +8)

3. 관련 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 호봉 기준에 따름.

•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8%로 산정.

나. 추계 결과: 10,156,897천 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 연도까지 총 10,156,897천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군비 10,156,897천 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붙임

6. 작성자: 기획예산실 기획담당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계
세 입		1,882,749	1,954,293	2,028,557	2,105,642	2,185,656	10,156,897
지 방 세		1,882,749	1,954,293	2,028,557	2,105,642	2,185,656	10,156,897
의존재원							
세 출		1,882,749	1,954,293	2,028,557	2,105,642	2,185,656	10,156,897
인 건 비		1,882,749	1,954,293	2,028,557	2,105,642	2,185,656	10,156,897
재원 조달		1,882,749	1,954,293	2,028,557	2,105,642	2,185,656	10,156,897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 비		1,882,749	1,954,293	2,028,557	2,105,642	2,185,656	10,156,897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분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개발행위 허가 시 이격 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8년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다른 지자체의 자치법규 내용 등을 참고하여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방향(안 제1조, 제2조)
-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규정(안 제6조)

5.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6.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4) 규제심사: 원안 동의
-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8. 12. 24. ~ 2019. 1. 14.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6)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별표 1의 2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개발행위허가 시에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2018년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을 바탕으로 개발 행위허가에 관한 다른 지자체의 자치법규 내용 등을 참고하여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 및 용어 정의

- 안 제4조, 5조에 거리측정의 기준과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규정
- 안 제6조에 주변토지 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한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으로 도로에서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500m,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300m,
5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관광지와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등을 명시하였고,
- 안 제7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규정을 마련.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2. “주거지”란 주택(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이 밀집(주택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된 지역을 말한다.
3. “발전시설”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우량농지”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제4조(거리측정) 이 조례에서의 거리규정을 적용할 때 지역·지구·구역계 및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해당 태양광발전시설 예정 부지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를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 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가장 가까운 주거지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가.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500미터
 - 나.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300미터
 - 다. 5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자연환경을 특히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문화재의 보존 필요성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설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등 공익을 위하여 자연적·사회적 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6.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고, 그 완충 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울타리(웬스 또는 차폐를 식재)를 설치할 것.
7.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로 그 인접 토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배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직접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적법하게 조성된 대지 위에 설치하는 경우(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사항이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필요적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이 우려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항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입지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사항을 심의할 때 그 허가를 하는 것이 특히 합리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제6조의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 (나) 삭제 <2016. 6. 30.>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도시·군관리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도시·군계획사업	(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

과의 관계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시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별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숫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흠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것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삭제>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검토 분야	허가 기준
가. 시가화 용도	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 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나. 유보 용도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

	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 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다. 보전 용도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일 것 2)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참고 2

타시도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조례제정현황]

구분	주요시설로부터 이격 및 제한				조성시 조건			기타
	도로	주거지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경지정리농지	인접토지 이격	울타리	차폐식재	
산업통상자원부 권고사항	100m	200m (10호 미만 100m)	문화재 500m 공공시설 200m	×				
달성군	500m	500m	관광지 500m 문화재 500m 공공시설 500m	×	3m	2m		·거리기준은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 ·2018년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 시행
조례	경주시	300m	관광지 500m	×		2m	○	
	구미시	200m	관광지 500m					저수지 경관 및 생태 보호
	김천시	300m, (농로 100m)		×	2m	○	2m	
	문경시	500m	관광지 500m	×				
	상주시	100m						
	인동시	500m	10호이상 500m 5~10호 300m 5호미만	×	3m	2m	○	진출입로 폭 2.8m이상 확보할 것.
	의성군	500m (군도 200m)	자연취락지구, 및 10호이상 200m 10호미만 100m	×		2m	○	건축물 위 높이제한(2m)
	봉화군	500m	관광지 500m 공공시설 500m	×				
지침	영덕군	200m (철도진출입 300m)	관광지 200m 문화재 200m	×	2m		2m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예외
	칠곡군	500m (군도 250m)	관광지 500m	×				기존사업부지 연접지역 X 발전시설 용량 100kw이하 제외
	영주시	500m	관광지 1000m 문화재 500m	×		2m	○	도로포장 6m 이상 권고 등 철새 등 조류 보호
	포항시	경관 훼손X	경관 훼손X	×	3m		2m	저수지 경관 및 생태 보호
	성주군	500m 농로 300m	300m (10호 미만은 주택수당 30m)	×				저수지 경관 및 생태 보호
	예천군	500m	300m (10호 미만 150m)		3m	○	○	
	울진군	1000m		×	3m		2m	산지공간정보 5영급 이상 X
	청도군	300m	300m	×		2m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비슬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 근거 규정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시설의 위치 및 용어의 정의
- 이용시간 및 휴관일, 시설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체험료 징수 및 감면, 예약, 납부에 관한 사항
-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 수입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의2 및 제22조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2019. 1. 3. ~ 2019. 1. 17.
-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비슬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 이용자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수준 높은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정의)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
- 안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에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명시하였고,
- 안 제5조(입장 및 시설 이용의 제한)에는 제4조의 사유 외에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과 사전 공지에 대하여 규정.
- 안 제6조(체험료 징수 및 감면 등)에는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체험료와 징수방법, 감면사유를 명시하였고,
- 안 제7조(예약 및 체험료의 납부 등)에는 프로그램 예약방법과 취소에 따른 체험료 반환기준.

- 안 제8조(위탁관리 등)는 상위법령에 따라 시설을 위탁관리.
- 안 제9조(수입금의 처리)에서는 체험료 등 수입금의 처리방법.
- 별표1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체험료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기본체험료는 1만원이며, 단체, 달성군민,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 보훈대상자는 20% 감면하고, 자연휴양림 등 숙박시설 이용자는 40%를 감면하는 안입니다.
- 별표2에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 취소에 따른 체험료 반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산2-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군이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체험료”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시간 09:00 ~ 18:00(프로그램 이용 10:00 ~ 17:00)
2.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

나.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 및 시설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산불방지, 치유센터 및 시설의 개·보수 등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유의 숲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 및 일정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체험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군수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군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치유센터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이 군이 주최하는 행사와 관련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치유센터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안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체험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폰 banking, 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예약 및 체험료의 납부 등) 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한 날 당일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별표 2의 체험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8조(위탁관리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 전체 또는 일부시설을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수입금의 처리) 치유의 숲 운영 수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0조(준용)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험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제6조에 따른 체험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제6조제1항 관련)

대상자	체험료		비고
	개인	단체	
일반	10,000원	8,000원	※ 비고 1. - 일반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 - 단체란 10인 이상이 같은 회차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달성군민 체험료는 본인에 한하며, 일행이 달성군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달성군민 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하는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5·18 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대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를 말한다. - 아젤리아 호텔 등에 숙박하는 자에 대한 체험료는 그 시설의 숙박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달성군민			
다자녀 가정			
장애인	8,000원	-	
국가보훈 대상자			
아젤리아 호텔, 자연휴양림, 비슬산 오토캠핑장에 숙박하는 자	6,000원	-	※ 비고 2. -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2】

체험료 반환기준(제7조제3항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1.체험예약자 또는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 체험예정일 1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 전액 환불 ○ 체험예정일 당일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50% 환불 ○ 체험예정일 당일 프로그램 시작 후 취소한 경우 : 미반환
2.체험예약자 또는 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취소된 경우	○ 체험료 전액 환불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달성복지재단 임원 선임 방법, 임기 등 임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상임이사직을 신설하여 임원 역할과 책임을 강화.

4. 주요내용

○ 임원의 구성 등

- 1) 구성: 이사→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 감사→2인
- 2)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명
 - 가) 이사장: 이사 중에서 호선
 - 나) 상임이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
- 3) 이사장의 임기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
- 4) 상임이사의 임기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상근으로 한다.
- 5)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비상근으로 한다.

○ 임원의 직무

- 1) 이사장: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 업무 총괄

- 2) 상임이사: 재단의 업무를 총괄
- 3) 이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결산서 심의·의결
- 4) 감사: 재단의 회계 및 사무 감사

5. 관계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9. 1. 4. ~ 1. 20.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달성복지재단 임원 선임 방법 및 임기 등 임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상임이사직을 신설하여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상근으로 하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고,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이며,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
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비
상근으로 한다.

④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상근으로 한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
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비상근으로 한다.

⑥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제8
조에 따른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을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결산서를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정원·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 <u>재단은 이사회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u>	제7조(임원) ① <u>재단은 이사장,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u>
② <u>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대표 이사를 겸한다.</u>	② <u>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u>
③ <u>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u>	③ <u>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u>
	④ <u>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상근으로 한다.</u>
	⑤ <u>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비상근으로 한다.</u>
	⑥ <u>이사의 구성에 있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다.</u>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의 직무) ① <u>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u> ② <u>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	제8조(임원의 직무) ① <u>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 ② <u>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u> ③ <u>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결산서를 심의·의결한다.</u> ④ <u>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
제10조(사무국) <u>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조직은 정관으로 정하고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이 한다.</u>	제10조(조직 및 직원 등) <u>재단의 조직·정원·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참고 1

관계법령(발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 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②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②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활성화 지역인 화원읍 천내리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및 군의회의 의견청취 후 공모신청

4.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II. 검토의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
 - 노후화,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3년 6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 2016년 12월에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전략계획에서 화원읍 천내리 일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적합한 활성화지역으로 제시.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사업명은(가칭) ‘상상과 추억을 함께 만드는 화원마을’
- 사업대상지는 화원읍 천내1,2리 일원의 181,000㎡
- 사업내용으로, 첫 번째, 중심상권 활성화입니다.

화원 공설시장 내 스마트 정보센터 및 으뜸상품 판매센터를 설치하고, 5일장 구간 도로를 상업특화가로로 조성.

- 두 번째, 도심중심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과 연계하여 화원공공복합청사 내에 어울림 문화센터 및 어울림 교류센터를 조성하여 스포츠, 문화시설, 공연장, 주민커뮤니티시설, 창업 지원시설, 또한, 화원시장 인근 군유지를 활용하여 꿈나무 상상 어울림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내 영유아 거점시설로 조성.

- 세 번째, 도심인프라 개선입니다.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지능형 CCTV, 스마트 가로등 설치 등으로 살기 좋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자 하며,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천내2리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실버커뮤니티센터를 건립.

○ 위와 같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의견청취의 건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19. 1. .

제 출 자: 달성군수

☐ 제출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 제출사유

-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
-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적극 대응하고 노후 도시재생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활성화지역인 화원읍 천내리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 하고자 함.
- 특히, 올해 공모사업은 전년도와 다르게 지역주민 및 군의회의 의견청취 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신청 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본 안건을 마련하여 달성군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함.

☐ 활성화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본 대상지는 대구교도소의 장기간 입지 및 주변지역의 성장으로

인구유출이 심각하고 상권이 침체되면서, 도심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하여 도심공동화 현상 등의 도시문제가 대두됨

- 쇠퇴지역의 잠재력과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변지역으로 도시재생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 2018. 7.: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미선정)
- 2018. 12.: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법 변경통보
- 2018. 12.: 공모사업 선정방법 변경에 따른 공모신청계획 착수
- 2019. 1. 18.: 주민공청회 개최
- 2019. 1. 23. ~ 1. 29.: 군의회 의견청취
- 2019. 2.: 활성화계획(안) 신청서 제출
- 2019. 2. ~ 3.: 실현 타당성 평가 및 적격성 검증
- 2019. 3.: 국토부 최종선정
- 2019. ~ 2023.: 사업선정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개요

- 사업명: ‘상상과 추억을 함께 만드는 화원마을’ (가칭)
- 사업기간: 2019년 ~ 2023년
- 대상지: 화원읍 천내1,2리 일원(181,000㎡정도) [붙임]참조
- 사업비: 300억원(국비 150억, 시비 75억, 군비 75억)

○ 사업내용

(단위: 억 원)

주요 사업명 (사업내용)		위치	사업비
A 중심상권 활성화	①화원시장 스마트 정보센터 (디지털 사이니지, 모바일 서비스망)	화원 공설시장	5
	②화원시장 으뜸상품 판매센터 (특산물 판매, 서비스 교육)		5
	③상업특화가로 조성 (보행환경 개선, 테마가로 조성)	5일장 구간도로	18
	합 계		28
B 도심중심기능 강화	①어울림 문화센터 (스포츠, 문화시설, 공연장 등)	공공복합청사 (4개층)	117
	②어울림 교류센터 (주민 커뮤니티시설, 창업지원 등)	공공복합청사 (1개층)	42
	③꿈나무 상상 어울림센터 (어린이 놀이방, 육아지원센터 등)	시장 주차장	73
	합 계		232
C 도심인프라 개선	①살기 좋은 ‘화원마을’ 만들기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구간 내 골목가로	8
	②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지능형 CCTV, 스마트 가로등 설치)		10
	③아동센터 기능강화 (방과후 학습 및 체험활동 보조)	화원지역 아동센터	2
	④실버커뮤니티센터 (경로당,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등)	천내2리 마을회관	20
	합 계		40
사업비 총 합 계			300

참고 1

관계법령 등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